##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2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서영교·박해철·주철현

허성무 • 복기왕 • 정진욱

황정아 • 박수현 • 김병주

전용기 · 문금주 · 김문수

이훈기 • 조 국 • 이기헌

윤준병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9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서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처분계획서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필요성
- 2. 처분하려는 자산의 규모와 명세
- 3.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된 처분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 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승인한 처분계획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처분계획서에 따라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

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서의 작성방법,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제39조의3에 따른 처분계
	<u>획서</u>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39조의3(처분계획서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 그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u>1. 처분의 필요성</u>
	2. 처분하려는 자산의 규모와
	<u>명세</u>
	3.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처분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 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기 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승인한 처분계획서를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처분 계획서에 따라 처분하려는 자 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 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 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서에 대 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서의 작성방법, 자산가액의 계산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